

고용전략상 “의미 있는 노동”의 정의 : 고임금 일자리가 항상 가장 가치 있는가?

Nicolas Bueno (Professor, UniDistance Suisse)

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가 있지만,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방식으로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70년 넘는 기간 동안 보편적 노동권에 따라 각국 정부는 완전고용을 목표로 하는 경제정책을 채택해야만 했다. 그런데 이러한 고용정책에서는 민간시장에서 창출되거나 공공근로를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의 의미와 종류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 일은 결국 (최저 근로조건이 충족된) 양질의 일자리로서 (국가가 일방적으로 부여하지 않고)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것이기만 하면 되었다.¹⁾ 이러한 최저 기준 외에도, 이 글에서는 왜 국가가 고용정책을 추구함에 있어 일이 사회적 및 환경적으로 지니는 의미에 대해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단순히 세수를 위해 고임금 노동자를 유치하는 데에만 중점을 두는 정부의 전략이 왜 장기적으로는 이롭지 못할 수 있는지도 설명한다. 일이 지니는 가치 중 통화시장적 가치인 임금 이외의 가치에 대해, 그리고 고용 및 노동법이 이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이 글에서는 탈성장론²⁾을 적용하였다.

1) Bueno, N.(2022), “Work, Right to”, in Binder, C. et al.(eds.), *Elgar Encyclopedia of Human Rights*, Edward Elgar, p.578.

2) Post economic growth(post-growth) theories.

■ 경제적으로 생산적인 노동에 대한 의존도

역사적으로 각국 정부는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고용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창조적인 것으로 증명되었다. 버트런드 러셀(Bertrand Russel)이 역설적으로 기술한 바와 같이, 구소련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백해와 시베리아 북부 해안지역의 기온을 높이는 사업 등을 포함하여 여러 놀라운 사업들을 설계하였다.³⁾ 이에 반해 시장경제체제에서는 국가들이 경제성장과 생산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생산을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소비가 증가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앙드레 고르츠(Andr Gorz)는 예컨대 어떻게 상업적 광고가 인위적으로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개인을 사회화된 소비자로 바뀌게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어떻게 소비가 한달 노동에 대한 보상의 원천에 불과한 것이 되었는지를 기술하였다.⁴⁾ 국가는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소비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노동력의 생산성에도 투자한다. 국가는 일반적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가장 생산적인 기업들을 유지하는 데 목표를 두는 동시에 개인들에게도 교육을 받고 자신의 인적자본에 투자하도록 독려한다.⁵⁾

이러한 고용전략은 25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다. 아담 스미스는 1776년에 출간한 『국부론』에서 한 경제체제의 목표는 국가의 물질적 부를 늘리는 데 있으며 이러한 목표는 생산적 노동자의 수를 늘리거나 그들의 생산력을 높임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⁶⁾ 주로 남성 경제학자들이 주도하여 집필한 경제학 문헌에서는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을 구분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생산적 노동은 비생산적 노동보다 물질적 부에 더 직접적으로 기여하기 때문에 더욱 유용하며, 따라서 정부는 생산적 노동을 촉진해야 한다고 보았다.⁷⁾ 이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시장이 노동을 선택하도록 맡겨 두는 것이었다.

어느 정도까지는 이러한 성장과 생산주의적 고용전략이 본질적으로 나쁘지는 않다. 더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국가에 대해서는 훌륭한 세원이 되며, 이는 부의 분배 방식에 따

3) Russell, B.(1936), *In Praise of Idleness: And Other Essays*, 3rd impr., Allen & Unwin, p.9.

4) Gorz, A.(1989), *Critique of Economic Reason*, Verso 1989, p.45.

5) Becker, G. S.(1993), *Human Capital,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Third Edit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6) Smith, A.(1999), *The Wealth of Nations*, Penguin Classics 1999, p.105.

7) Bueno, N.(2022), "From Productive Work to Capability-Enhancing Work: Implications for Labour Law and Policy",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and Capabilities*, 23(3), p.356.

라 모두에게 이로울 수 있다. 이러한 논리는 ILO의 법적 근거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⁸⁾ 예컨대 필라델피아 선언에 의하면, 사회적 정의를 추구할 때에는 반드시 전 세계의 생산적 자원이 더욱 완전하고 광범위하게 활용되어야 하고, 생산과 소비를 확대하는 조치들이 포함되어야 한다.⁹⁾ 같은 맥락에서 고용정책협약¹⁰⁾상 당사국은 완전하고, 생산적이며,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추구할 것임을 약속하도록 요구받는다.

이러한 내용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해된다고 가정하고, 이 글에서는 노동의 양과 보수에만 중점을 두는 전통적인 고용전략과 관련한 두 가지 비용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고임금 일자리는 사회적 및 환경적 비용을 직접적으로 초래할 수 있다. 둘째, 자신의 노동을 통해 사회적 및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 그러한 노동에 대한 시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실현할 수 없는 경우, 이러한 개인들의 숙련을 상실하게 되는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다음 글에서 “의미 있는 노동”에 대해 정의를 내린 이후, 필자는 고용전략의 수립 시 일자리의 의미와 목적을 고려하게 되면 이러한 두 가지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결과적으로 더욱 효율적인 고용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글은 각국 정부에 이러한 비용을 파악하고 산출하도록 촉구하는 글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이 지니는 가치 중 임금 이외의 내재적 가치들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¹¹⁾

■ 탈성장론상 “의미 있는 노동”의 개념

학문적 연구 문헌에서 “의미 있는” 노동에 대한 논의는 전통적으로 무엇이 일을 개인에게 의미 있게 만드는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노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벨트만(Veltman)은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노동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측면을 지닌다고 보았다. ① 노동자의 인적 숙련을 개발 또는 발휘하게 하며, ② 명예와 자부심과 같은 덕목들을

8) Dermine, E. and D. Dumont(2022), “A Renewed Critical Perspective on Social Law: Disentangling Its Ambivalent Relationship with Productivism”,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Labour Law and Industrial*, 38(3), p.246.

9) Declaration of Philadelphia, Article IV.

10) Employment Policy Convention.

11) Dermine, E. and D. Dumont, *op.cit.*, p.246.

지지하고, ③ 개인적 목적을 제공하거나 타인을 위해 진정으로 유용한 목적에 기여하며, ④ 노동자 삶의 여러 요소들을 통합하는데, 예컨대 개인적인 관계를 형성 또는 반영하거나 노동자 자신이 상당히 동질감을 느끼는 환경적 또는 관계적 상황에 본인을 연계시키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¹²⁾

이와 같은 의미 있는 노동의 개인적 측면을 넘어 살펴보면, 일자리가 개인이나 국가에 대해 제공하는 경제적 기능 외에도 사회나 환경에 대해 지니는 본질적인 중요성을 강조하는 다양한 개념들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노동법에서는 전통적으로 돌봄노동¹³⁾이 이에 해당하지만, 최근에는 녹색 일자리, 환경·사회적으로 유용한 노동,¹⁴⁾ 역량증진 노동(capacity-enhancing work)¹⁵⁾의 개념들도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일자리들과 활동은 단순히 개인의 소득원 또는 국가의 세원에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일자리들은 집단적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목적을 추구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의미가 있다. 이 글에서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노동을 이와 같이 정의한다. 의미 있는 노동은 노동의 본질적 가치와 목적이 아니라 근로조건 차원의 질을 중시하는 양질의 노동과 같은 개념들과는 다르다. 일부에서는 경제적 생산 이상의 사회적 가치를 의미 있는 노동이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탈성장 노동(post-growth work)¹⁶⁾ 또는 탈생산적 노동(post-productive work)¹⁷⁾이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한다.

예컨대 ILO는 UN환경계획, 국제노동조합총연맹, 국제사용자기구와 공동으로 “녹색 일자리 이니셔티브(Green Jobs Initiative)”를 추진하였다.¹⁸⁾ ILO는 녹색 일자리를 에너지와 원료의 소

12) Veltman, A.(2016), *Meaningful Work*, Oxford University Press, p.117; 다음 글도 참조하시오. Michaelson, C.(2021), “A Normative Meaning of Meaningful Work”, *Journal of Business Ethics*, 170(3), p.413.

13) Judge, J.(2014), “Feminist Reflections on the Scope of Labour Law: Domestic Work, Social Reproduction”, and Jurisdiction *Fem Leg Stud* 22, pp.1~23.

14) Dermine, E. and D. Dumont, *op.cit.*, p.246.

15) 생산적 노동의 개념에 관해서는 다음 글을 참조하시오. Bueno N.(2022), “From Productive Work to Capability-Enhancing Work: Implications for Labour Law and Policy”, p.356.

16) Seidl, I. and A. Zahrnt(eds.)(2022), *Post-Growth Work. Employment and Meaningful Activities within Planetary Boundaries*, Routledge.

17) Bueno, N., B. Ter Haar and N. Zekić, “Labour Law Beyond Growth and Productivism: An Introduction”, in Bueno, N., B. Ter Haar and N. Zekić(eds.), *Labour Law Utopias: Post-Growth and Post-Productive Work Approaches*, Oxford University Press(2024년 발간예정).

18) UNEP(2008), “Green Jobs: Towards Decent Work in a Sustainable, Low-Carbon World” Full Report; UNEP/ILO/IOE/ITUC: Washington, DC, USA.

비를 줄이며,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고, 폐기물과 오염을 최소화하며, 생태계를 보호 및 복원하고, 기업과 지역사회가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양질의 일자리로 정의하고 있다.¹⁹⁾

다른 글에서 필자는 특정 일자리들이 인간의 기본적 자유에 미치는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을 조명하고자 하였다. 마사 누스바움(Martha Nussbaum)이 『역량의 창조(Creating Capabilities)』라는 저서에서 정의한 가장 중요한 인적역량(적극적 자유)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노동을 필자는 “역량증진 노동(capability-enhancing work)”이라는 용어로 기술하였다. 마사 누스바움은 자신의 방법론에 따라, 예컨대 건강을 유지하고,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적절한 주거를 확보하며, 자유롭게 이동하고,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상태에 있으며, 적절한 교육을 받고, 자연과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는 능력을 그러한 역량에 포함시켰다.²⁰⁾ 필자는 이러한 자유에 대한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더 큰 일자리와 활동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양 섭취나 주거 확보와 같은 기본적 자유를 위해 일해야 한다는 점도 밝힌 바 있다. 우리가 일해야만 얻을 수 있는 이러한 기본재를 사회가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일을 해야 하는 필요로부터 더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²¹⁾ 이것이 자유증진 노동(freedom-enhancing work)의 개념이다.²²⁾

최근 ILO는 필수 업무의 개념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필수 업무의 가치(The Value of Essential Work)』라는 보고서에서 ILO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정부가 일부 업무를 다른 업무보다 더 필수적인 업무로 간주하였다고 지적하고, ILO 회원국의 코로나19 관련법에서 필수로 규정한 모든 업무를 열거하였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식량, 물, 전기, 위생, 의료서비스, 공공질서의 유지와 같은 필수적 편의를 보장하는 활동이 필수 업무에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원격근무가 불가능한 (일선에 있는) 필수 업무 직종의 노동자들을 식품체계(food system) 노동자, 보건 노동자, 소매업 노동자, 보안 노동자, 육체 노동자, 청소 및 위생 노동자, 운송 노동자, 기술/사무직 노동자라는 8개의 집단으로 세분화하였다.²³⁾

19) ILO(2018), “World Employment Social Outlook: Greening with jobs”, ILO, p.53.

20) Nussbaum, M.(2011), *Creating Capabilities*, Harvard University Press, pp.33~34.

21) Bueno, N.(2022), “From Productive Work to Capability-Enhancing Work: Implications for Labour Law and Policy.”

22) *Ibid.*

23) ILO(2023), *The Value of Essential Work: World Employment and Social Outlook 2023*.

이와 같이 의미 있는 노동의 목록을 본보기로 작성한 것은 보편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기본적인 목적들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이다. 하지만 한 나라 또는 한 공동체에서 의미 있다고 해서 반드시 다른 곳에서도 의미 있거나 그만큼 중요한 것은 아니다. 무엇이 의미 있는 노동인가는 반드시 공론의 결과여야 한다. 의미 있는 노동이 공통적으로 지니는 또 다른 요소가 있다. 의미 있는 노동은 그 중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ILO가 정의한 필수 업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체로 보수가 적으며, 때로는 무급 돌봄노동의 경우와 같이 보수가 전혀 지급되지 않기도 하고,²⁴⁾ 그러한 일자리에 대한 시장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미 있는 노동을 수행할 수 있는 선택권조차 가지지 못한 경우도 있다. 달리 말하면, 시장체제가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 고임금 일자리가 항상 의미 있는 것은 아니다 : 직접 비용과 기회비용

투자은행업, 보험, 무역 등과 같이 시장가치가 높은 부문은 보수가 높다. 국가 차원에서 이러한 부문은 (재분배 메커니즘에 따라 다르지만) 좋은 소득원이 된다. 이러한 부문에는 (경제적 측면에서) 가장 숙련된 노동자들이 모여들지만, 동시에 사람들과 그들의 기본적인 필요나 환경이 이러한 부문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도 있다. 식품, 주택 또는 에너지 거래 부문의 고임금 일자리를 예로 들어보자. 이러한 일자리들에서는 필수품(식품, 주택, 에너지)을 최저 가격으로 구입하여 이를 최고 가격으로 판매하는 일을 한다. 이러한 유형의 일자리는 단지 비필수적인 것만이 아니다. 식품 또는 주택과 같은 기본재의 가격을 올림으로써 그러한 필수품에 대한 접근성을 직접적으로 낮추어, 결과적으로 빈곤과 경제적 불안정 및 사회적 불안을 심화시킴으로써 높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경제적 불평등은 우리 모두가 함께 지불해야 할 비용을 낳는다.²⁵⁾

때로는 더욱 복잡한 상황이 되기도 한다. 예컨대 농약을 사용하여 식량을 생산하면 생산 비용은 줄이고 기본 생필품인 식품에 대한 접근성은 높일 수 있다.²⁶⁾ 하지만 농약을 사용하는 농사에는 사회적으로 높은 비용이 따른다. 국가가 토양 또는 수질을 관리하고 복원하기 위해 필요

24) *Ibid.*, p.62.

25) Stiglitz, J.(2013), *The Price of Inequality*, W.W. Norton & Company.

26) 추가적 논의를 위해서는 다음 글을 참조하십시오. Bueno N.(2022), "From Productive Work to Capability-Enhancing Work: Implications for Labour Law and Policy", p.362.

한 실질적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며, 여기에는 공공보건 비용은 포함되지도 않는다. 요컨대 일부 생산적 노동 자체에는 사회 전체에 부과되는 비용이 직접적으로 발생한다. 현재까지 노동법에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외부효과라는 개념으로 어느 정도 다루어지는 이러한 직접적인 비용 외에도, 높은 임금을 통해 고임금 노동자만을 장려하는 경우 국가적으로나 전 지구적으로 기회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연구 문헌상 이러한 비용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적다. 빈곤층, 환경, 기후 등의 분야에는 분명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며, 그것도 상당히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필요 사항들이지만, 이러한 분야에는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이를 표현할 힘이 없다. 결과적으로 한 국가에서 개인이 빈곤층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환경 또는 기후를 보호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더라도, 이러한 의욕과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제적 기회 사이에는 불일치가 존재할 수 있다. 이는 수많은 사례에서 발견된다.

지역사회를 위한 전통적 식품보다는 수출을 위해 엄선된 특정 이국적 과일을 생산해야만 하는 농부, 수질 오염의 피해를 겪는 빈곤 지역을 위해 무료 자문을 제공하느냐 아니면 수질 오염을 일으킨 기업의 의뢰를 받아 그 책임을 덜 수 있도록 변호하느냐를 두고 선택해야 하는 변호사, 소외층을 돕고 싶어할지도 모르는 심리학자, 휴양지 별장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집이 없는 이들을 위해 집을 짓고 싶어하는 건축가나 건설 노동자가 이러한 예에 속한다.²⁷⁾ 실제로 이러한 기회비용은 집단적으로 합의된 중요한 목적을 위해 개인이 사용하고 싶어 하지만 그럴 수 있는 시장이 없는 모든 유형의 비경제적 숙련에 존재한다. 때로 그러한 시장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경쟁으로 인해 그러한 숙련의 사용이 불가능해진다.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싶어 하지만 재래농을 상대로 가격 경쟁에서 이길 수 없는 농부, 이산화탄소 중립 비행기를 개발하고 싶어 하지만 회사의 시장점유율 경쟁으로 인해 늘 업무에 쫓기는 에어버스 사나 보잉 사의 엔지니어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는 그들의 숙련이 사라지는 것을 목격하게 되고 그것이 시장경제가 돌아가는 방식이라고 믿게 된다. 이 지구상의 사람들이 이러한 낭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27) 다른 사례들은 다음 글을 참조하십시오. *Ibid.* Bueno N. (n 4).

■ 탈성장 고용전략 : 법은 언제 개입해야 할까?

지금까지는 경제성장과 생산성이 아닌 다른 가치들을 중심에 두는 경제이론은 고용전략 수립 시 거의 검토되지 않았다. 현재 식품 또는 주택의 거래와 같은 특정 경제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적인 비용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고용전략은 없다. 일반적으로 고용법도 집단적으로 합의된 비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농부, 심리학자, 변호사, 건축가, 건설노동자, 엔지니어 등이 그들의 비경제적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창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는 않다.

노동 및 고용법에 대한 연구는 노동이 지니는 가치 중 임금 이외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논의를 소개하기보다는, 고용형태(시간제 노동, 기간제 계약, 파견노동계약, 영시간 계약, 호출형 계약, 플랫폼을 통한 클라우드 워크)²⁸⁾와 같은 형식성과 근로조건(임금, 노동시간)에 중점을 두고 있다. 노동 및 고용 전략은 양질의 노동에 대한 약속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양질의 노동은 더욱 전체론적인 방식으로 업무 활동의 가치와 비용을 고려하지 않으면 실현될 수 없다. 고용정책의 목표는 자유롭게 선택된 양질의 일자리를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노동과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노동이 최대한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필자는 제안한다.

이러한 정책의 첫걸음은 지역사회, 국가 또는 국제사회 차원에서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노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파악하는 일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마리아나 마주카토(Mariana Mazzucato)가 권고한 사명²⁹⁾ 차원에서 생각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사명에는 기후 배출가스 감소, 빈곤 완화, 필수품 보장 등이 포함된다. 지역사회, 국가 또는 국제사회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이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어떠한 유형의 노동과 활동이 가장 의미 있으며, 어떠한 유형의 노동과 활동이 가장 해로운가?

의미 있는 유형의 노동과 해로운 유형의 노동이 파악되고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노동 및 고용법에 법적 인센티브와 억제 메커니즘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노동과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노동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가장 해로운 일자리들은 억제하고 의미 있는 노동을 장려하기 위해 적어도 법률적 개입 정도는 이루어져야 한다.

28) Kenner, J., I. Florczak and M. Otto(eds.)(2019), *Precarious Work: the Challenge for Labour Law in Europe*, Edward Elgar Publishers.

29) Mazzucato, M.(2021), *Mission Economy: A Moonshot Guide to Changing Capitalism*, Allen Lane, London.

노동 및 고용법상의 법적 인센티브는 의미 있는 노동과 관련하여 보조금, 훈련 및 인프라에 대한 투자, 세금 감면 등으로 제공될 수 있다. 아직까지는 성장 논리(녹색성장)에 그치고 있고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유럽 녹색 고용 이니셔티브³⁰⁾는 녹색 일자리를 육성하기 위해 법률로 시행할 수 있는 인센티브의 예를 일부 제시하고 있다. 녹색 숙련을 육성하고, 녹색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며, 자원 효율과 재생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금을 활용하거나, 과세 대상을 노동에서 오염원으로 전환하거나, 녹색 공공조달을 확대하는 것 등이 이러한 인센티브에 해당된다.³¹⁾ 이와 유사한 조치들은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거나, 돌봄을 제공하거나 건강에 이로운 일자리를 위해서 적용할 수도 있다. 이는 개인적 및 사회적으로 확인된 의미 있는 노동을 더 잘 조화시키기 위하여 고용전략에 의미를 도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의미 있는 노동을 장려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우리는 일부 고임금 업무활동이 초래하는 직접적인 비용과 기회비용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사회와 각국은 집단적 차원에서 합의된 목적들에 유해한 고임금 일자리들의 매력도를 법적으로 낮추어야 하는데, 예컨대 빈곤과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무역 부문의 일자리가 이러한 예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노동법과 고용정책은 이러한 일자리들과 관련하여서는 다소 중립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었다. 퇴직급여나 실업급여를 보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과 같은 일부 조치들은 의도치 않게 그러한 일자리를 장려하는 효과가 있다. 억제 메커니즘으로는 이러한 업무활동에 대해 소득세를 높이거나 해당 상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있으며, 그 결과 고임금과 관련된 사회적 혜택을 제한하거나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 그러한 혜택을 금할 수 있다. 이러한 방안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공적 목적을 추구하는 경쟁적 활동에 대해 공정한 경쟁의 장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농약의 사용을 줄이는 농법이나 등유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함으로써 이산화탄소 중립적 항공기의 제작을 가속화하는 것 등이 이러한 활동의 예에 해당한다.

요컨대 이 글을 통해 각국 정부에게 노동의 가치를 시장 가치에 국한시키지 말고 그 이상을 고려하여 자국의 노동 및 고용전략에 의미 있는 노동의 개념을 도입하도록 촉구하고자 한다.

KLI

30) European Green Employment Initiative.

31) European Commission(2014), Communication, Green Employment Initiative: Tapping into the Job Creation Potential of the Green Economy, COM(2014) 446, p.9.

참고문헌

- Becker, G.(1994), *Human Capital: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with Special Reference to Education*, Third Edit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ueno, N., B. Ter Haar and N. Zekić, “Labour Law Beyond Growth and Productivism: An Introduction” in Bueno N., B. Ter Haar and N. Zekić(eds.), *Labour Law Utopias: Post-Growth and Post-Productive Work Approaches*, Oxford University Press(2024년 발간 예정).
- Bueno, N.(2022), “From Productive Work to Capability-Enhancing Work: Implications for Labour Law and Policy”,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and Capabilities*, 23(3).
- _____ (2022), “Work, Right to”, in Binder, C. et al.(eds.), *Elgar Encyclopedia of Human Rights*, Edward Elgar, pp.578~583.
- _____ (2017), “From the Right to Work to Freedom from Work: Introduction to the Human Economy”,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Labour Law and Industrial Relations*, 33(4), pp.463~487.
- Dermine, E. and D. Dumont(2022) , “A Renewed Critical Perspective on Social Law: Disentangling Its Ambivalent Relationship with Productivism”,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Labour Law and Industrial*, 38(3).
- Gorz, A.(1989), *Critique of Economic Reason*, Verso.
- Judge, J.(2014), “Feminist Reflections on the Scope of Labour Law: Domestic Work, Social Reproduction, and Jurisdiction”, *Fem Leg Stud* 22, pp.1~23.
- Mazzucato, M.(2021), *Mission Economy: A Moonshot Guide to Changing Capitalism*, Allen Lane.
- Michaelson, C.(2021), “A Normative Meaning of Meaningful Work”, *Journal of Business Ethics*, 170(3), pp.413~428.
- Nussbaum, M.(2011), *Creating Capabilities*, Harvard University Press.
- Russell, B.(1936), *In Praise of Idleness: And Other Essays*, 3rd impr., Allen & Unwin.
- Seidl, I. and A. Zahrnt(eds.)(2022), *Post-Growth Work. Employment and Meaningful Activities within Planetary Boundaries*, Routledge.
- Smith, A.(1999), *The Wealth of Nations*, first published 1776, Penguin Classics.
- Stiglitz, J.(2013), *The Price of Inequality*, W.W. Norton & Company.
- Veltman, A.(2016), *Meaningful Work*, Oxford University Press.